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장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9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김평남, 이현찬, 성중기,
이은주, 김상훈, 김창원, 홍성룡,
성흠제, 박순규, 전석기, 김기대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다원화 되고 급변하게 될 미래경제사회를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시스템은 현실적 경제활동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학습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생활을 펼쳐야할 성인들 또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시민들에게 경제생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나. 경제교육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다. 경제교육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라.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경제교

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기본계획수립, 경제교육의 종합적 추진, 경제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안 11조)

아.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제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

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26,000천원+업무추진경비 4,500천원=30,5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200천원×13명×연 2회×5년=26,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시의원(1명) 및 담당국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5명×연 2회×5년=4,5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경제교육인력 양성 : 연간 비용 13,000천원×5년=65,000천원

- 연간 비용 : 2020년 KDI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경제교육강사연수 소요비용 13,000천원(강사비 10,000천원+교재비·다과비 등 3,000천원) 적용

※ 2020년 KDI종합교육연수원 경제교육강사연수

과정명	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즐거운 경제수업 1기	'20.8.3~8.5	18시간	36명	서울 홍릉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교육동
즐거운 경제수업 2기	'20.8.6~8.8	18시간	36명	

자료 : KDI종합교육연수원

○ 경제교육 위탁 : 연간 비용 135,750천원×5년=678,750천원

- 연간 비용 : 기획재정부 지정 서울·인천경제교육센터 2019년 경제교실 소요비용 135,750천원 적용

※ 2019년 서울·인천경제교육센터 경제교실 실적 및 소요 비용

과정명	교육실적			소요비용 (천원)
	횟수	시간	인원	
계	769	1,448	15,530	135,750
교사 경제교육	1	9	40	567
학교방문 경제교육	349	698	9,009	60,000
취약계층 경제교육	398	699	5,652	67,906
일반인 경제교육	21	42	829	7,277

자료 :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서울·인천경제교육센터 위탁기관)

○ 재정지원 : 연간 비용 18,000천원×5년=90,000천원

- 연간 비용 : 2020년 광주광역시 시민경제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8,000천원 적용(참고 : 2020년 광주광역시 시민경제교육 예산 사업설명서)

307 민간이전	48,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
○시민경제교육	18,000
○중소기업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30,0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

시민경제교육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 4. ~ 8월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소년원, 경로당 등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5개 항목) 시행
- 총사업비 : 18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2019 시민경제교육 보조금 교부 : '19. 1.
- 2019 시민경제교육 시행 : '19. 1. ~ 9.
 - 지역청소년 대상 경제순환 이해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금융경제교육, 실버 경제교육, 소년원 경제교육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c)	기 투 자(a)			'20예산 (b)	이후계획 (c)	비 고
			소계	'18까지	'19년			
합	계	144	126	108	18	18		
재 원 별	○국	144	126	108	18	18		
	○시							
	○구							
	○기							

□ 추진일정

- 2020 시민경제교육 보조금 교부 : '20. 3.
- 2020 시민경제교육 추진 : '20. 4. ~ 12.
- 2020 시민경제교육 정산 : '21. 1.